BNIX 부산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-1010 심의일자 2025.05.13 유효기일 2025.05.14 ~ 2026.04.30



정기적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**「금융소비자**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상품 개요 및 특징 1

▶ 상품명 : 정기적금

▶ 상품특징 :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| | | | (2025.05.14 현재, 단위 : 연, 세전)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구 분 | | 내 용 | | | | |
| 가입대상 | ■ 제한없음 | | | | | |
| 상품유형 | ■ 정기적금 (정기적립식) | | | | | |
| 가입금액 | ■ 100원 이상 (제한없음) | | | | | |
| 계약기간 | ■ 6개월 ~ 60개월 (월 단위) | | | | | |
| 거래방법 | ■ 신규 : 영업점, 디지털데스크■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디지털데스크 | | | | | |
| 이자지급시기 | ■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| | | | | |
|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|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·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| | | | | |
| | 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 이율 적용 | | | | | |
| | 구 분 | | 기본이율 | | | |
| | 율 정기적립식 |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연 1.85% | | | |
| 기본이율 | |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| 연 2.00% | | | |
| • — • — | | 24 개월 이상 36 개월 미만 | 연 1.70% | | | |
| | w 171191 014L | 36 개월 이상 60 개월 이하 | 연 1.70% | | | |
| | ※ 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기본이율 : 연 2.30% (최소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적금상품의 만기 후 이율적용을 위한 금리로 실제 일반정기적금은 6개월 이상부터 가입가능함) | | | | | |

(P. N.K. 부산은행 ■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(원미만 절사) * 정기적립식 이자 계산 예시(매월 자동이체로 일정금액 불입 가정시) 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월수/12 1회차 입금 만기이자 (입금금액 x 약정이율/12x12) 2회차 입금 산출근거 (입금금액 x 약정이율/12x11) 3회차 입금 (입금금액 x 약정이율/12x10) 12회차 입금 (입금금액 x 약정이율/12x1) 만기전일 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 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(단, 최저이율은 0.01%) 예치기간 이 율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4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 기본이율 x 7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 기본이율 x 8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11개월 이상 ~ 만기일 전일 기본이율 x 9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(중도해지 이율 계산 예시) 중도해지 이율 및 기본이율 x 90% 산출근거 x 경과일수/계약일수 기본이율 x 8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기본이율 x 7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기본이율 x 4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11개월 이상 ~ 만기일 6개월 9개월 신규일 만기일 전일 ☞ 중도해지 이율은 가입일 당시 이 적금의 기본이율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 ☞ 중도해지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한 세전 이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일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. ■ 만기후 1년 이내 :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/2 만기후 이율 ■ 만기후 1년 초과 :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/5 가입기간별 기본이율 1/2 가입기간별 기본이율 1/5 산출근거 만기일 1년 연계·제휴 ■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만기앞당김 지급 ■ 만기앞당김 지급 가능 ■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일별/주별/월별 자동이체 등록 가능 자동이체 (자동이체 등록은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가능하며,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) 무통장거래 ■ 이 적금 신규 시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| | | 유 영언적 또는 비대면 채넉을 통하여 해지학 수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계약해지방법 | ■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. ■ 자동 만기 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. ■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(단, 계약기간 6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) | | | | |
| 휴면예금 및 출연 | ■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| | | | |
| 위법계약해지권 | 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(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)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) | | | | |
| 자료열람요구권 | 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※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있습니다. | | | | |
| 양도 | ■ 이 통장의 양도 | 는 불가합니다. | | | |
| 질권설정 | ■ 이 통장의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.■ 예금담보대출은 납입금액의 95%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 | | | | |
| 재예치 | 불 가 |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 | | | |
| 분할인출 | 불 가 | 이 적금의 분할인출은 불가합니다. | | | |
| 세제혜택 | 가 능 |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 | | | |
| 예금자보호여부 | 해 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|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 5천만원까지 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| | | |

3 유의 사항

- ▶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**부산은행**고객센터(1588-62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**금리변동형 정기적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**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| 고정금리 | 변동금리 | |
|------|--|--|--|
| 운용형태 | 금리 기간 | 금리 | |
| 특 징 | ■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| ■ 일정주기(3,6개월 등)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| |
| 장 점 | ■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| ■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| |
| 단 점 | ■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| ■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| |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| 용 어 | 내 용 | | | |
|------|---|--|--|--|
| 압 류 | 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| | | |
| 가압류 | 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 | | | |
| 질권설정 |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| | | |
| 출 연 |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 | | | |

| | | | | l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| 영업점 | 당행 홈페이지 '영업점 찾기'참조 | |
| | | 고객센터 | 1544-6200/1588-6200 | |
| | | 인터넷 홈페이지 | www.busanbank.co.kr | ВИК |
| | ᆸ재ᄌ정 | 금융감독원 | 국번없이 1332 | БІЛІ |
| 분쟁조정 | e-금융민원센터 | www.fcsc.kr | | |
| | 상품 개발부서 | 개인고객부 | 051-620-3328 | |

BNIK 부산은행